

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 신청서

신청인정보	업 체 명	(인)
	사 업 자 등 록 번 호	
	소기업·소상공인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상공인 확인기간 : 20 ~ 20

주 계 약 내 용	계 약 명	
	수 요 기 관	
	계 약 금 액	
	보 증 기 간	

1. 「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」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.
2. 「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」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「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」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「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」에 따라 산출된 최종 보증료가 최저보증료(10,000원)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보증료(10,000원)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4. 「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」은 보증료 납부 전 할인의 형태로 적용되며, 보증료 납부 후 보증료를 환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.
5. 「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」은 2014년도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금액 기준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됩니다.

담 당 자 정 보	성 명 / 직 위	/
	사 무 실 전 화	
	휴 대 전 화	
	F A X 번 호	

위와 같이 「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」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중소기업중앙회 귀중